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89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박상웅·강승규·박성민

고동진 · 김대식 · 박덕흠

유용원 · 김민전 · 김 건

조지연 · 김미애 · 강민국

조경태 · 이철규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못 한 상황임.

소나무재선충병은 집단 고사목이 누적되어 산불을 야기할 수 있고, 토양 지지력이 약해져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크며, 또한 금강소나무 림,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주요 소나무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선 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회재난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을 통해 피해 확산 방지 및 복구를 도모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가축전염병의 확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 1. -----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 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 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 나.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 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 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 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 의 확산, 「소나무재선충 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 병 방제특별법 에 따른 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먼지, 「우주개발 진흥

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	
한 피해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